

의안번호	2203498
의 퇴 인	김상훈의원
회 답 일	2024. 11. 4.
추계번호	24D326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의 분쟁조정 업무 증가에 따라 조사인력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8,000만원, 2030년 1억 9,3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9억 1,000만원(연평균 1억 8,2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협의회 분쟁조정 업무 증가 (안 제24조의5제3항제3호)	180	173	179	186	193	910	18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4조의5제3항제3호(조정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사실 조사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4조의5제3항제3호 (조정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분쟁이 조정 신청되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가 증가되고, 이에 따른 조사인력이 증원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 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설치(2011년)되었으며, 국가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규정¹⁾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²⁾
- 개정안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이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⑩ 국가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2024.10)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1	2.0	2.0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3.2	3.6	3.9	3.8	3.8	3.8	3.8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협의회 분쟁조정 업무 증가(안 제24조의5제3항제3호)

- 협의회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각하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의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사실³⁾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경우 피해업체는 상대업체가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조정 신청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개정안에 따라 협의회 분쟁조정 업무 증가에 따른 조사인력을 증원하는 경우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인건비
 - (대상) 동 법에 따른 최근 5년간 시정실적은 연평균 110건⁴⁾이며, 분쟁조사 인력 1인당 처리건수는 58건⁵⁾(2023년) 정도로 2명(110건÷58건)을 증원한다고 가정함
 - (단가) 시정조치된 사건에 대한 조정업무는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실무인력급인 5급(2024년 6,600만원, 수당, 법정부담금, 퇴직금 포함)이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함⁶⁾
 - (소요비용) 증원인력 수 2명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한 1인당 급여를 곱하면 2026년에 1억 4,200만원(2명×7,104만원)으로 추정
 - 운영비
 - 조정원의 인건비 대비 운영비 비중(33.99%=25억 9,100만원÷76억 2,200만원)⁷⁾을 곱하여 산출

3) 이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실적 건수: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시정실적 건수(건)	157	130	90	89	86	11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23년도 통계연보, P.82)

5) 2023년 기준 하도급거래 분쟁조정신청 처리건수 929건, 1인당 처리건수는 58건(929건÷16명)으로 추정

6) 현재 하도급거래 조정신청 담당인력은 16명으로 실장 1명(2급), 팀장 2명(3급), 팀원 13명(4급~6급)임

7)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4년 예산은 142억 3,300만원(인건비 76억 2,200만원, 기관운영비 25억 9,100만원, 사업비 40억 2,000만원)

○ 자산취득비

- 신규인원 2명에 공공기관의 1인당 자산취득비 674만원을 곱하여 산출
-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⁸⁾에 근거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a)	142	147	153	159	165	766
운영비 (b)	24	25	26	27	28	130
자산취득비 (c)	14	-	-	-	-	14
합 계 (a+b+c)	180	173	179	186	193	9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

8)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2020. 6)』